

* 200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농정시책

국회는 지난해 12월 29일과 31일 각각 본회의를 열어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특히 한농연중앙연합회에서 끊임없이 주장했던 과실주 주세율 인하,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등 많은 요구사항이 관철되었고 직선조합장 선거를 선관위에서 관리하는 등 많은 농업 정책이 바뀔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호에서는 200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농정시책과 주요 쟁점에 대하여 알아보자.

* 주요 바뀐 법률은 무엇인가?

올 1월부터 소규모 농민 등이 생산하는 과실주의 주세율이 30%에서 15%로 하향조정되고, 국가재보험 제도가 올해 도입된다.

또 농림어업용 유류의 면세기한이 2007년 6월 말까지 2년 연장되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9일 각각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우선 국내 과수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소규모 농민 또는 생산자 단체가 제조하는 과실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고수량 이하의 것에 대해서는 15%의 주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주세법증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또 거대재해 위험을 국가가 인수하는 국가재

보험제도의 도입, 적기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보험기금의 설치, 농가부담 경감 위한 재해보험 관리·운영 경비의 전액 정부지원 등을 골자로 한 ‘농작물재해보험법개정법률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오는 6월 말 종료되는 농림어업용 유류의 면세기한을 2007년 6월 말까지 연장하고, 농지를 일정 기간만 ‘직접 경작’ 하면 양도 소득세가 감면되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 제한법중개정법률안도’도 의결했다.

국회는 이밖에 ‘농어촌특별세법중개정법률안’ ‘자연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개정안’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등도 처리했다.

또한 법 개정 이후 농협중앙회직을 비상임직으로 전환해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려 했으나 국회가 농협 부문별 대표이사의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축소시켜 중앙회장의 영향력을 그대로 유지시켰다.

아울러 정작 350만 농민들과 한농연 등 농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신·경분리(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문제는 1년 유예를 두기로 확정돼 “지나치게 미적거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 정부 예산안 관련(직불제와 농가소득안전망 구축 중심으로)

직접지불제 사업은 2005년 요구된 농림예산 중 직접지불사업 비중은 9%. 이는 2001년의 미국 36%, 유럽연합 70%, 일본 13%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경영이양직불사업은 보조금 지급단가가 낮아 농지 임대를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축산발전기금은 농림부가 제출한 2005년 조달·운용금액은 9,299억원으로 2004년보다 1,348억원 줄었다. 주요 재원인 KRA(옛

문제점은 없는가?

▶ 협동조합법 관련

정부는 당초 1구역 1조합제를 폐지함으로써 지역별로 난립해 있는 지역 조합간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조합을 통폐합, 조합의 규모화를 이루려했지만 과잉경쟁이 우려된다는 정치권의 논리로 결국 무산됐다.

한국마사회) 납입금과 융자금 이자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므로 신규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쌀소득보전기금 2005년 조달·운용금액은 1,633억원으로 2004년보다 407억원 늘었다. 이 중 2005년 농업인 납부금(204억원)이 실제보다 과대계산됐을 가능성성이 있다. 이는 쌀소득보전직불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의 예상약정농지를 50만5,000ha로 잡았을 때 나온 금액으로, 2004년 약정면적(13만8,385ha) 등을 고려할 때 예상약정면적이 과대 책정됐을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의 2005년 조달·운용금액은 1,662억원으로 2004년보다 55억원 늘었다. 그런데 경쟁력제고사업 중 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사업은 농업인 자부담이 20%로 높은 편이다.

▶ 그밖의 문제점

화학비료 판매가격 차손 보전 폐지는 친환경영농이 필요한 만큼 바람직하나, 비료 값 상승으로 인해 농민의 생산비 급등이 우려된다.

과실주 주세를 인하하였으나 쌀로 빚은 약주

의 주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농지전용이 심각한 만큼 창업 중소기업 공장 신설시 농지조성비 면제는 무분별한 농지전용의 방편이 될 수 있다.

▶ 한농연의 요구사항 및 관철사항

▶ 협동조합법

농협개혁 완수를 위해 관련법안 재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농협법 개정을 통해 한농연이 그동안 요구했던 농협 개혁안이 관철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신·경분리, 시군지부 폐지, 도지역본부장 선출 등 농협의 조직체계를 전환할 수 있는 주요과제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조합원실익 증진을 위한 경제·지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농민조합원 중심의 실익 증진에 부합하는 농협 조직체계의 완성과 이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중앙 정부 및 지자체 등 관련 조직들의 유기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아울러 경제·지도사업 활성화를 앞당겨 국

산 농축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조합원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각종 제도의 보완 및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각종 시설의 유지 · 확충 등 하드웨어적 지원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 양성 · 지역 브랜드 개발 및 육성 작목반 등 기초생산자 조직의 활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의 마련 및 추진이 요구된다.

▶ 정부예산안 관련(직불제 확충과 농가소득안 전망 구축 중심으로)

직접지불 관련 예산편성의 문제점은 친환경 영농의 일환인 논농업직불과 화학비료판매가 격 차손보전사업이 상충한다는 점에서 두가지 제도간의 조절은 필요하다. 따라서 위기에 직면한 농업을 살리기위해서는 비료판매가격 차손을 없애고 그 액수 만큼 논농업직불제 단가 상승이 불가피하다.

경영이양직불사업은 보조금 지급단가가 낮아 농지 임대를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고령농가가 농작업을 위탁할 때 얻는 소득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보조금 단가를 높일 필요가 있다.

농지관리기금은 규모화 일변의 농정 추진을

재검토하고, 쌀값 하락에 따른 소득안정장치 마련과 고품질 쌀 생산에 힘을 써야 한다. 그리고 경쟁력제고사업 중 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 사업은 농업인 자부담이 20%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절감되어야 한다. 과수농가의 부채가 쌀 · 채소 · 밭작물 농가보다 높은 현실을 고려하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조비율을 높여 농업인 자부담 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

▶ 그밖의 문제점

영세 전통주 제조 업체가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한 만큼 쌀로 빚은 약주 주세는 현행 30%에서 5%로 인하되어야 하고, 창업중소기업의 농지조성비면제는 부분별한 농지전용의 방편이 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청에서 엄격한 심사후에 농지조성비를 대신 납부해야 한다. 한동연